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4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7.

발 의 자 : 김도읍 · 서천호 · 조배숙
이현승 · 구자근 · 박성훈
김은혜 · 강대식 · 박충권
김형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의 증가, 취업 연령의 상승 등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음. 이에 미취업자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,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.

한편,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주거·교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청년근로자를 확보하고 장기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이로 인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하고,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,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의2 신설).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34세”를 “40세”로 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에 관한 특례) ① 정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기재직지원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되,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중 해당 인구감소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주택의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
2. 해당 지역으로 이주에 필요한 비용
3. 사업장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비

4. 그 밖에 장기채직 및 지역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채직기간, 소득수준,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및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단하고,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따른 지원대상, 지급기준·금액·기간 및 방법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의 조정, 지원의 중단과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)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15세 이상 <u>34세</u> 이하인 미 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 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 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(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) ① ----- ----- <u>40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<u>제30조의2(인구감소지역 중소기 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지 원에 관한 특례) ① 정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 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재직지원금을 지 급할 수 있다.</u>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재직지원 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하 여 지급하되, 3년 이상 계속하 여 근무하는 중소기업 청년근 로자에게는 추가로 지급할 수

있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중 해당 인구감소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주택의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

2. 해당 지역으로 이주에 필요한 비용

3. 사업장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비

4. 그 밖에 장기재직 및 지역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재직기간, 소득수준,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및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

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3항에
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
여는 그 지원을 중단하고, 이미
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
를 환수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
른 지원대상, 지급기준·금액·
기간 및 방법, 다른 법령이나
조례에 따른 지원과의 조정, 지
원의 중단과 환수 등에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